

## 바. 지역한우개량 정보화지원사업 추진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작물기술과(지방농촌지도사 이기택, 031-229-5866)입니다.

### (1) 목 적

- 한우 암소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및 대외 경쟁력 강화
- 지역·브랜드별 한우고기 차별화를 통한 쇠고기 품질 향상

### (2) 추진계획

(가) 사업대상 :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

(나) 사업량 : 1개소

(다) 사업비 : 70,000천원 (국비 70%, 지방비 30%)

(라) 사업내용

- 지역단위의 한우개량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개량기술 활용지원체계 구축
  - 지역내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컨설팅지원 체계 확보·활용  
(인근 대학 또는 한우개량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컨설팅 계약체결, 축산과학원과 협의)
  - 지역단위 한우개량 정보관리체계 지원(축산과학원)
- 한우개량을 위한 능력검정자료 조사·입력
  - 개체 기초정보 수집(측정)·입력 : 3,000두 이상
  - 초음파 생체영상 촬영·입력 및 DNA샘플채취 : 1,000두 이상
  - 참여농가 개량기술 및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
- 지역·브랜드별 컨설팅 지원
  - 수집된 개량자료를 바탕으로 지역·브랜드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암소별 능력을 분석하고 지역으로 환류(축산과학원)
  - 한우개량에 관한 종합컨설팅 제공(컨설팅 기관)
    - 품질·육량 등 브랜드별 특화된 암소 개량형질 선정
    - 초음파 육질측정 등 개량정보 측정·수집방법 지도
    - 선발, 도태 및 사양관리 등에 관한 종합컨설팅

### (마) 추진순기표

세 부 내 용	추진시기(월)												익년 1월
	1	2	3	4	5	6	7	8	9	10	11	12	
○ 사업계획작성·제출 및 컨설팅계약체결	.....	계획 제출	계약 체결										
○ 사업추진		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.....	
○ 사업점검 및 평가							실 적 제 출					실 적 제 출	평 가

### (3) 사업 기준단가

- 초음파측정 및 혈액 샘플 채취 : 1,000두 × 30천원 = 30,000천원
- 개체 기초정보 수집(측정)·입력비 : 3,000두 × 10천원 = 30,000천원
- 참여농가 교육 및 컨설팅 : 5,000천원 × 2회 = 10,000천원
- ※ 위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지역별 실정에 따라 적정 사업비 산정

### (4) 세부사업추진 요령

#### (가) 조사자료의 활용조건

- 본 사업을 통하여 조사 수집된 한우 개체능력자료는 지역내 한우개량사업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한우개량에 관한 공익목적의 활용을 전제한 국가 단위의 활용을 수락하는 조건임

#### (나) 대상농가 및 대상축 선정

- 대상농가는 관내 한우 사육 농가 중 일정 규모이상의 다두 사육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한다.
- 개체 기초 정보 측정축은 대상 농가 보유 한우로 하되 다만 초음파 측정 대상우의 경우 임신중인 암소는 가급적 측정을 제외한다.
- \*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보유중인 비육우에 초음파 측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소가 전체 측정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# (다) 개체 기초정보 조사항목

- 개체 기초정보 조사축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조사 입력한다.

- 농장정보 : 농장주, 농장주소,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, 이메일, 보유  
두수, 축산업 등록번호
- 개체 및 혈통 정보(필수입력)
  - 개체식별번호, 부·모 개체식별번호, 성별, 생년월일, 등록구분, 등록번호,  
산차, 최초수정일, 이유 일령, 구입일자, 구입농장, 구입시 바코드, 구입시  
임신여부 및 정보
- 체중정보(선택) : 생시, 이유시, 12개월령 체중, 초음파 측정시 및 출하시  
\* 체중은 농가에 우형기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흉위 측정에 의한 간이  
체중을 기록할 있으나 구분하여 표시하여 함
- 수정정보(암소) : 해당 산차, 교배정액 및 수정일, 교배방법, BCS, 임신  
감정일, 감정사, 감정결과
- 분만정보(암소) : 분만일, 송아지 성별, 송아지 생시체중, 분만난이도,  
쌍태여부, 분만시간
- 도 체 정 보 : 도축일, 도체중, 도축시 생체중(절식체중),  
배최장근단면적, 육색, 성숙도, 근내지방도, 등지방  
두께, 지방색, 조직감, 경매가격
- 거세정보(수소) : 거세일, 거세방법
- 출하정보 : 출하일, 출하구분, 도축장명, 출하가격
- 백신정보 : 백신 주사일, 백신종류, 예방접종
- 질병정보 : 질병명(국영문), 발병일, 치료방법, 수의사
- 초음파정보 : 측정일, 측정자, 측정기종, 임신여부, 측정화상, BCS  
\* 각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축산과학원의 별도 지침에 준한다.

(라) 초음파 측정

- 초음파기기는 남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또는 용역 기관이 보유한  
기기를 활용한다.
- 초음파 촬영은 촬영자를 지정하여 활용하며 측정자는 소정의 교육을  
축산과학원에서 득해야 한다.
- 초음파 측정 부위는 해당 소를 뒤에서 보았을 때 좌측 부위를 측정하며

마지막 갈비와 첫 번째 요추 사이를 정중앙 선과 직각으로 탐촉자를 접촉하여 등심의 전체 면적이 확연히 나타나는 지점을 측정한다.

- 초음파 측정시에는 이물질 제거 및 털깎기를 실시하며 오일로 도포하여 공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
- 초음파 화상은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한다.

(마) DNA 샘플 채취

- 초음파 측정 대상우중 일정 분량에 대하여 초음파 측정 후 혈액 채취를 실시한다.
- 혈액채취는 경동맥 또는 미추에서 채취하며 채취 후 헤파린 처리된 9.5ml 튜브에 담아 잘 흔든 후 냉장 보관한다.
- 혈액채취 튜브에는 채혈한 해당개체의 채취일시 및 식별번호를 유성펜으로 기재한다.
- 보관된 혈액은 7일 이내에 부패하지 않도록 아이스팩과 동봉하여 택배 또는 우편으로 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에 송부한다.
- \*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
- 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에서는 혈액으로부터 DNA 분리 및 보관을 하며 본 시료를 연구에 활용코자 할때는 남양주시의 사전 동의를 득하며 연구 결과를 남양주시에 환류하여야 한다.

(바) 참여 농가 및 조사원 교육

- 남양주시에서는 축산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해당자에 반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.
  - 초음파 측정자에 대한 초음파 측정 교육
  - 조사원에 대한 정보 조사 및 D/B 입력 교육
  - 농가에 대한 한우 개량 교육
-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교육장 제공, 농가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.

(사) 용역기관의 컨설팅 항목

- 용역기관은 Database에서 필요한 사항을 출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농가에 지도하여야 한다.

- 농가 우군별 현황(수정, 분만, 임신 감정 대상우 등)
- 번식 및 도체 성적에 대한 컨설팅(타 농가와 비교 분석)
- 출하, 백신 작업등 주·월간 작업 내역
- 체중 및 BCS 경향에 대한 설명 및 지도

※ 첨부 표준 용역계약서(견본) 참조

### (5) 기대효과

- 한우 암소개량에 의한 한우고기 고품질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
- 소비자 기호에 따른 지역·브랜드별 한우고기 차별화

### (6)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

- '08년도 사업계획 제출 : 2월 12일 까지
- 반기별 실적제출 : 상반기 7월 5일까지, 하반기 12월 15일까지
- 제출양식 : 붙임참조

<제출서식>

## 2008년도 지역한우개량 정보화지원사업 추진

□ 기관명 : \_\_\_\_\_

○ 담당자 소속 : \_\_\_\_\_ 성명 : \_\_\_\_\_ 전화 : \_\_\_\_\_ e-Mail : \_\_\_\_\_

□ 사업계획 개요

○ 참여 농가수 : \_\_\_\_\_호, 대상두수 : \_\_\_\_\_두, 브랜드 명 : \_\_\_\_\_

○ 사업추진(컨설팅) 방법 :  자체추진,  외부기관(대학, 축협 등) 위탁

○ 세부추진 계획서 : 별도 작성하여 제출

(자체 추진계획서 또는 외부위탁 계획서 등)

□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

구 분	계 획	실 적	
		상반기	연간
기초성적 조사/입력(두)			
초음파 육질측정(두)			
혈액 샘플 채취(두)			
대상농가 교육(호)			
현장 기술지도(회) (호당 컨설팅 수행 횟수)			

□ 성과목표 및 실적

구 분	전년실적	계 획	실 적
수혜자 만족도(%)			
한우 개량율(%) (1등급 출현율)			

□ 기타 특이사항 등

문제점, 개선방안, 건의사항 등

<외부위탁 표준계약서>

# 지역한우개량사업 정보화 용역계약서(건본)

○○군(시)(이하“갑”이라 함)과 ○○대학(이하“을”이라 함)간에 “갑”의 한우개량 종합 컨설팅 정보화 용역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함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- ① 본 컨설팅의 목적은 “갑”의 의뢰에 의해 “을”이 “갑”의 소속 한우농가의 한우개량 종합컨설팅을 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다.
- ②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변경의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## 제2조 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7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

## 제3조 (한우개량 종합 컨설팅 정보화)

본 계약에서의 한우개량 종합 컨설팅 정보화(이후 “정보화”라 함)란 ○○군·시의 한우개량을 위한 각종 정보(농가, 개체, 혈통, 사양, 질병, 도축정보 등)를 수집하여 이를 정해진 DB에 입력하고 지정된 한우에 대한 초음파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실시함을 말한다.

## 제4조 (정보화 범위 및 내용)

- ① 본 용역의 범위는 ○○군·시의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용역 내용은 “한우개량 종합 컨설팅 정보화”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세부사업내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사업실시요령에 준한다.
  - 개체 기초정보 수집(측정)·입력 : 000두 이상
  - 초음파 생체영상 촬영·입력 및 DNA샘플채취 : 000두 이상
  - 참여농가 개량기술 및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

## 제5조 (계약책임자)

- ① 계약책임자는 다음 사람으로 한다.

□주 소 :

□소속/직위 :

□성 명 :

### 제6조 (용역비용 등)

본 계약은 계약금액에 한하여 그 비용을 “갑”이 부담하고, 추후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### 제7조 (용역비 지급방법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정보화 용역비용 합계 일금 ○○○○○○○원(\\○○○○○○○)을 다음 ②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과의 계약 시 계약금 일금 ○○○○○○○원(○○%)을 지급하고 잔금 일금 ○○○○○○○원(○○%)의 지급은 사업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“을”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.

### 제8조 (용역결과 제출)

“을”은 상반기 및 년차 실적 보고서를 “갑”에게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월 정보화 용역결과를 “갑”에게 약식 보고한다.

### 제9조 (용역결과 귀속)

- ① 본 용역과 관련하여 “을”이 제공한 정보 등 일체의 용역 결과는 “갑”과 “농촌진흥청”의 공동소유로 한다.
- ② “을”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“갑”이 요구하는 이외에는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분석결과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
### 제10조 (계약의 변경)

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 이행 상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“을”이 본 계약상의 용역 목적이나 이행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
  - 2.“을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때
  - 3.“을”의 용역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상기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금액을 “갑”에게 반환한다.

### 제12조 (불가항력)

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, 폭동, 홍수, 지진,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 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 (채권양도 금지 등)**

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 
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

**제14조 (계약효력의 발생)**
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 체결한 일로부터 유효하다.

**제15조 (계약의 해석)**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“갑”과  
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6조 (재판관할)**

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  
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러한 이견이나  
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 
법원으로 한다.

**제17조 (기타)**

본 계약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 
부를 작성하고 “갑”과 “을” 쌍방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“갑”

소재지 :

기관명 :

대표자 : (인)

“을”

소재지 :

기관명 :

대표자 : (인)